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심장질환④

심장마비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11. 선고, 90구113682 판결
-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동시행령 5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누476 판결

판결요지

목욕 중 쓰러져 사망한 원고는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병가를 얻을 즈음에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 걸려 있어 그간의 누적된 과로가 급속히 위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함이 마땅하다.

◆판결이유

1. 전남 신안군 임지남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하던 소외 망 ○○○이 1990. 1. 25. 11:40경 광주 서구 주월1동 1283의 3 소재 해성목욕탕에서 목욕하던 중 사망한 사실 및 위 망인의 처 원고 ○○○가 위 망인의 질병과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목욕 도중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신체변화에서 기인된 심장마비에 의한 것으로써 이는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0. 4. 26. 위 청구에 대한 부결처분(부지급통보)을 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은 평소 강한 상태이었는데 위 사망전 학교급식소 설치를 위한 장기간의 과로로 인하여 신체가 쇠약해지는 등 질병이 생겨 정식으로 병가를 얻은 후 바로 다음날 아침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목욕을 하던 중 목욕탕에서 졸도사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이를 단순사고라고 볼 수 없고 공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내지 10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2, 갑제19호증, 증인 00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000은 1934. 2. 21. 생으로서 1954. 9. 30.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12. 10. 전남 장성군 성산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전남도내 몽탄북초등학교, 오상초등학교, 학산도 영산초등학교, 자은남초등학교, 자은서초등학교 등 주로 도서지방 초등학교에 교사 또는 교감으로 30여년간 근무하다가 1986. 9. 1. 교장으로의 승진과 동시에 전남 임자도 소재 임자남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임자남초등학교는 서해안 낙도 소재 초등학교이고 학생들의 수업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다른 학교에 비해 빈약하여 위 망 000은 이를 해결하기로 하고, 도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예산을 확보하고 운동장 보토작업, 별관 및 교실 개수공사, 유리창 샷시공사, 각 교실 시청각 교재 설치를 위한 전기전선공사, 과학실 1동 신축, 체육창고 및 교사사택을 건립하여 온 사실, 한편

위 임자남초등학교의 학생은 약 337명 정도이나 그들의 부모가 대부분 영세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한 일부 학생은 통학거리가 8킬로미터가 되는 마당에 학교에 출석하려면 바닷물이 빠진 후에나 가능하여 학교시간에 맞추어 출석하기 위해서는 아침식사를 짚고 나와야 하는 등 이로 인하여 결식학생이 많았는 바 위 망 000은 1987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1989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에 있어 문교부로부터 급식학교 지정을 받는 방법에 의하기로 하고 우선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학교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설비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비를 학부형 등의 도움으로 마련키로 한 뒤, 위 망 000은 위 학부형들이 대부분 낮에는 바다등지로 나가 작업을 하는 관계로 주로 퇴근 후에 그들을 호별방문하여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 결과 학부형들의 협조승락을 받은 후 1989. 6월 경 문교부로부터 급식학교 지정통보를 받기에 이른 사실,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 경 급식소시설 공사가 시작되었는 바 위 망 000은 위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입 등 업무감독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장으로서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훨씬 증가하여 피곤한 기색을 띠는 경우가 종종 교사들에게 목격되어 왔으며 특히 1989년 겨울방학부터는 본격적으로 위 급식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방학 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7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5시경 퇴근하는 가운데 학교업무를 보면서 위 공사를 감독하는 등 격무로 인하여 계속 피로상태가 누적되어 간 사실, 그러던 중 1990. 1. 20. 경 급식소 건물이 완공되고 이어 주방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같은 해 2월 경 개관을 예정으로 잔여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망 000은 계속 이와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에 시달려 잠을 잘 때에는 앓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

업무상재해의 판례

져 처인 원고와 학교 교사들의 권유로 광주로 가서 건강진단을 받기로 한 사실, 이에 위 망인은 같은 해 1. 24.에도 아침 7시에 출근하여 학교업무 및 위 급식소 시설공사를 감독하고 다음날 해야 할 작업내용을 지시한 뒤 병가를 낸 후(근무상황부에는 같은 해 1. 24.부터 같은 해 1. 25.까지 사이에 피로로 인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병가로 기재되어 있다) 그날 12:00경 원고와 함께 광주로 출발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학교에서 광주로 가기 위하여는 바로 갈 수는 없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배를 1번 타야 하는데 위 망 〇〇〇은 배에서 내린 후 마지막으로 광주행 버스를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행 버스를 탔었는 바 그 이유를 묻는 원고에 대하여 그는 몸이 피곤하여 버스의 색깔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할 정도의 극한 피곤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와 같은 상태로 광주자택에 도착한 사실, 위 망 〇〇〇은 다음날(1. 25) 아침식사 후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이발 및 목욕을 하기로 하고 츄리닝 차림으로 위 목욕탕에 갔는 바, 그곳에서 먼저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던 중 11:40경 위 목욕탕의 욕조 속에 머리를 계속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목욕탕 주인인 소외 〇〇〇 등이 위 망 〇〇〇을 위 욕조에서 들어내고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망 〇〇〇의 입에서 물은 나오지 아니하고 입주위에 약간의 침 등 거품만 나오는 등 회복의 기미가 없어 즉시 전남대의 대 부속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위 병원 도착시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하고 단지 위 병원의 당직 의사는 심장마비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만 하였을 뿐이고 위 망 〇〇〇에 대한 부검은 가족들의 반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한편 위 망 〇〇〇은 1986년도 공무원건강진단시는 물론이고 1988년도의 건강진단시에도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사실, 마지막으로 위 학

교의 급식소는 1990. 봄경 완공되었고 위 망 〇〇〇에게는 1990. 8. 31. 대통령으로부터 평생교육에 헌신하였음을 이유로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로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서,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 망 〇〇〇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비록 그것이 어떠한 질병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현대 의학수준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원인을 모두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위 망 〇〇〇은 위와 같이 1988. 공무원 건강진단시에는 건강하였는데 그 이후 정상적인 학교업무 이외에 여러가지 학교시설공사 등을 감독수행하여 오다가 이미 위와 같이 병가를 얻을 때 즈음 하여서는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 걸려 있었으며 그간의 누적되어 온 직무상 과로가 급속히 위 질병을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망 〇〇〇의 사망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는 위 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망 〇〇〇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부결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